

금전 공탁서(변제 등)

공 탁 번 호		년 금 :	ঝ <u>ই</u>	2000)년 () 윝	·□□신청	법령조항	민법 제4873	E
공 탁 자	성 명 (상호, 명칭)	00	Э	피	성 명 (상호, 명칭)		1.□□□ 2.◇◇◇		
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111111-11	11111	공		등록번호 등록번호)	1.111111-1111111 2.111111-2222222		
	주 소 (본점, 주사무소)	ㅇㅇ시 ㅇㅇ구	00길0	타 - 자	주 (본점,	소 주사무소)		1, 2 주소 ㅇ구ㅇㅇ길ㅇ	
	전화번호				전:	화번호			
공 탁 금 액		(한글) 금 일백만원정			보 관 은 행		은행 지점		
		(숫자) 1,000,000원					L 0 / 1 H		
공탁원인사실		별지와 같음							
		C , ,							
비고	L(첨부서류 등)	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, 회수제한신고서 2통 □ 계좌납입신청 □ 공탁통지 우편료						원	
	-탁으로 인하여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			
	세권 또는 저당 대급부 내용	권 없음 없음							
위	와 같이 신청합니	다. 대리인 주소				인 주소			
		전화번호			번호				
공탁자 성명 ○○○ 인			<u>l</u> (서명) 성명			인(서명)			
위 공탁을 수리합니다.									
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
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									
			년	월		일			
		법원		지원	공탁관		(인)		
(영수증)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.									
			년	월		일			
		공탁금	- 보관은행(공탁관)			(인)			

- ※ 1.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,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, 주소(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)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.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.
 - 2.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'고유번호'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 - 3.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[예 : 대한민국(소관청 : ○○○)].
 - 4.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, 피공탁자의 주소를

-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 5.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,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(피공탁자 수 × 1회 발송)도 납부하여 (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,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).

 6.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.

 7.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과하시기 되지요.





공 탁 원 인 사 실

공탁자는 20○○. ○. ○. 10:40경 서울 ○○라 ○○○○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소재 ○○삼거리 교차로를 ○○쪽에서 ○○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우측 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△△△운전의 서울 ○○ ○○○○호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밤바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하여 그 동안 유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공탁자의 보험 처리와 별개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의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고 처는 이혼을 하고 소재를 알지 못하여 합의도 못하고 공탁을할 수 없었는바, 이제 그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주소를 알게 되어 공탁금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현실 제공하였으나 유족들이 수령을 거부하므로 이에 부득이 공탁하게 된 것입니다.

관할법원 **※** 아래 1.참조 첨부서류 **※** 아래 2. 참조



1. 변제공탁의 관할

(1) 원칙: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채권자의 현재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채 권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

(2) 예외 :

- ㅇ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변제장소를 정한 경우에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.
-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(채권자)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.
- 약속어음 채무의 이행장소는 그 어음에 표시된 "지급지"(대판 1973. 11. 26. 73마 910), 지급제시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기간내 지급제시가 없는 때에는 약속어음 의 발행인이나 환어음 지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관할 공탁소(어음법 제42조, 제77조 제1항)

2. 변제공탁신청 제출서류 등『민법 제487조』

- 공탁서 2통【공탁소】
- 주소소명서면 등
 - 1.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(피공탁자의 주소소명 서면)
 - ① 피공탁자 주민등록등·초본 1통【동사무소】
 - ② 공탁통지서(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통수) 【공탁소】
 - ③ 일반 편지봉투(배달증명용 우표 첨부.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통수) 【우체국】
 - 2. 공탁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(피공탁자의 주소불명사유소명서면)
 - ①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(예, 변제공탁의 직접원인이 되는 계약서·재판 서·재결서, 등기부등본 등)
 - ②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(예, 피공탁자가 최종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통·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 주민의 확인서 등)
- 자격증명서 등(※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)
 - ① 법인의 대표자(대표이사 등) 및 등기된 지배인이 신청하는 경우:법인등기부등·초본
 - ② 법인 아닌 사단·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: 정관(규약) 및 규약에 따른 대표

- www.klac.or.kr/
- ③ 법정대리인(미성년자의 친권자 등)이 신청하는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
- ④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- ▷ 개인(변호사, 법무사 포함)인 경우-위임장(공탁자의 도장이 날인된)
 - ▷ 법인의 피용자(직원)인 경우-법인등기부등본, 위임장(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 인된)

■ 기타 첨부서면

- ① 기명식 유가증권 공탁: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 첨부
- ② 형사사건 관련 변제공탁일 경우:회수제한신고서 2통【공탁소】
- ③ 원격지 모사전송 공탁: 규격봉투(빠른 등기용 우표를 첨부) 1통 【우체국】
- 첨부서면의 생략

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탁서에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원용한다고 기재

-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·공무원증)《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신분증》
- 도장《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도장》